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방부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적의 핵 공격 등 억제 및 대응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전략사령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공사상 심사 제도 운영 및 재심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뢰대응활동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자원관리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지뢰대응활동팀을 신설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방민원센터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사복지실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부 주요 현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본부의 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7.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사기획관·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으로”를 “인사기획관·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으로”로, “인사기획관·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을 “인사기획관·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동원기획관”을 “예비전력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동원기획과·자원동원과·예비전력과”를 “예비전력기획과·자원동원과·예비군훈련정책과”로, “예비전력과장”을 “예비군훈련정책과장”으로, “동원기획과장”을 “예비전력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원기획과장”을 “예비전력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예비군 군수정책의 수립 및 관리

제10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전력과장”을 “예비군훈련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기계획의”를 “예산의 중기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비군 훈련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조정

8. 예비군 육성 지원,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9. 예비군 훈련 민원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항 중 “군주거정책과 및 환경소음팀”을 “군주거정책과, 환경소음팀 및 지뢰대응활동팀”으로, “군수지능화팀장 및 환경소음팀장”을 “군수지능화팀장, 환경소음팀장 및 지뢰대응활동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지뢰대응활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 지뢰대응활동 추진전략 수립·시행
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
3.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지뢰대응활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와 교육 발전
5. 지뢰대응활동 법령의 제정 및 개정
6. 지뢰대응활동표준의 수립 및 적용, 개정
7. 지뢰대응활동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8. 지뢰제거자(군, 민간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9. 지뢰대응활동 관련 국제기구, 지역 기구 및 단체 등과의 협력
10. 지뢰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1. 지뢰대응활동 관련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12. 지뢰의 탐지·제거, 조사 등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1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668”을 “671”로, 일반직 계 “660”을 “663”으로,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
서기관 “35”를 “34”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
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2”를 “5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1”을 “674”로, 일반직 계 “663”을 “666”으로, 부이
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 “35”를 “34”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3”을 “56”으로 한
다.

별표 6 2.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별표 6 3. 방위산업수출기획과(존속기한: 2025년 4월 30일)를 다음과 같
이 한다.

3. 방위산업수출기획과(존속기한: 2026년 4월 30일)

국방부령 제91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
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2월 28일”을 “2027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
뢰대응활동팀은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뢰대응활동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뢰대응활동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설기획과장이 분
장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인사복지실) ① (생략)	제10조(인사복지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복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인사기획관·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으로 하며, 인사기획관·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 ----- ----- <u>인사기획관·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으로</u> ----- ----- <u>인사기획관·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은</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동원기획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④ <u>예비전력정책관</u>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인력정책과·병영정책과·인적자원개발과·군종정책과·군무원정책과·군무원채용팀· <u>동원기획과·자원동원과·예비전력과·복지정책과·국방일자리정책과·보건정책과·군</u>	⑥ ----- ----- ----- ----- ---- <u>예비전력기획과·자원동원과·예비군훈련정책과</u> ----- -----

인연금과·군인재해보상과 및 감염병대응팀을 두며, 인사기획 관리과장·병영정책과장·군중 정책과장·<u>예비전력과장</u> 및 복 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 력정책과장·인적자원개발과장 ·군무원정책과장·<u>동원기획과 장</u>·자원동원과장·국방일자리 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군인 연금과장 및 군인재해보상과장 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무원채용팀 장 및 감염병대응팀장은 과학기 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 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 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 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 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⑬ (생략) ⑭ <u>동원기획과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 ----- ----- -----<u>예비군훈련정책과장</u>----- ----- ----- -----<u>예비전력기획과 장</u>----- ----- ----- ----- ----- ----- ----- ----- ----- ----- ----- ----- ----- ----- ⑦ ~ ⑬ (현행과 같음) ⑭ <u>예비전력기획과장</u>----- ----- 1. ~ 6. (현행과 같음) 7. <u>예비군 군수정책의 수립 및 관리</u> 8. (현행 제7호와 같음)
--	--

1. 국방부 지뢰대응활동 추진전략 수립·시행
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
3.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지뢰대응활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와 교육 발전
5. 지뢰대응활동 법령의 제정 및 개정
6. 지뢰대응활동표준의 수립 및 적용, 개정
7. 지뢰대응활동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8. 지뢰제거자(군, 민간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9. 지뢰대응활동 관련 국제기구, 지역 기구 및 단체 등과의 협력
10. 지뢰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1. 지뢰대응활동 관련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u>12. 지뢰의 탐지·제거, 조사 등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u> <u>1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업무</u> <u>14.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u>
국방부령 제91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방부령 제91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방민원센터는 <u>2025년 2월 28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7년 2월 28일</u>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68</u>	• <u>671</u>	+3
일반직 계	• <u>660</u>	• <u>663</u>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12</u>	• <u>13</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35</u>	• <u>34</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52</u>	• <u>55</u>	+3
•	•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71</u>	• <u>674</u>	+3
일반직 계	• <u>663</u>	• <u>666</u>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12</u>	• <u>13</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35</u>	• <u>34</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53</u>	• <u>56</u>	+3
•	•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0조제6항, 제20조의2제7항,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6제2항 및 제20조의7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2.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총계	
·	·	·	
·	·	·	
3	·	·	
방위산업수출기획과(존속기한: 2026년 4월 30일)	총계	총계	
·	·	·	
·	·	·	